

「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허가과장 김종완)

가. 제안이유

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하여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제정됨에 따라,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적용 범위(안 제2조)
- 정의(안 제3조)
- 정기점검 대상(안 제4조)
- 긴급점검 대상(안 제5조)

-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(안 제6조)
- 안전진단의 대상(안 제7조)
-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(안 제82조)
-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(안 제8조의2)
-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(안 제9조)
-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)
-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(안 제11조)
- 빙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‘22년 8일 「건축물 관리법」이 시행됨에 따라

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

우리 군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,

○ 조례내용은

정기점검 대상, 긴급점검 대상,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, 안전진단의 대상,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
이는 각각의 대상에 대하여

상위법에서 ‘지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’을 규정한 것으로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부.